국세청

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안내 〈장기요양기관〉

-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,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- 국세청은 **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수집**하여 「**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**」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.
- 귀 기관은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대상에 해당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, **'24년 귀속 자료를 '25년 1월 13일(월)**까지 **제출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안내

제 출 자 료	본인부담금 의료비 자료 (보험 + 비보험)
자료 제출 기한	**'25.1.13.(월)**
자료 제출 방법	①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로그인 → ② 장려금·연말정산·기부금 → ③ 연말정산간소화 → ④ 영수증 발급처 자료제출 → ⑤ 자료 제출하기

2024년 12월 일

국세청
National Tax Service

자세한 제출 요령은 뒷면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관련 문의는
【☎(국번 없이) 126 ➡ ① 홈택스 ➡ ⑤ 연말정산간소화】로 하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

’24년 귀속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요령

1 제출 대상 기관

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장기요양기관

2 제출 자료 : ’24년 귀속 본인 일부 부담금 자료

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40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자료

※ 비급여 항목인 식사 재료비, 상급 침실 이용료, 이·미용비 등은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.

※ 본인의 의료비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‘자료제출 제외(거부) 신청’한 의료비 자료는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.

3 자료 제출 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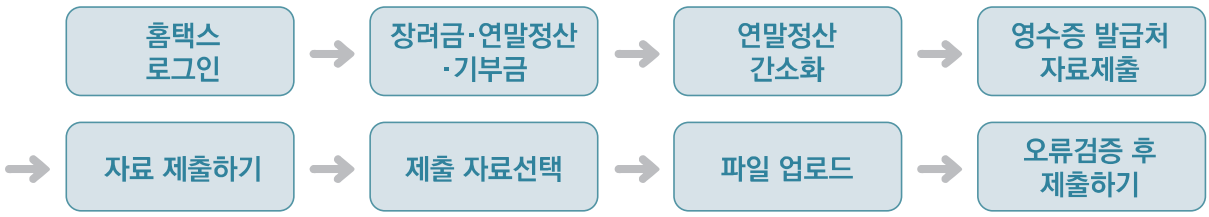

- 요양기관의 사업자 ID 또는 사업자 인증서 로그인해서 아래 ① 또는 ② 방법에 따라 제출

① 텍스트 파일로 제출 : (홈택스 〉 자료실(자료번호 468)의 「’24년_전산매체제출요령 의료비-요양기관)」 참조

② 엑셀 서식으로 제출 : 홈택스 〉 자료실(자료번호 468)의 엑셀서식(의료비)에 기재하여 제출

4 자료 제출 기한

	내 용	일 정
자료 제출 기한	원칙	’25. 1. 13.(월) 22시
	수정·추가 제출하는 경우*	’25.1.15.(수) ~ 1.18(토) 18시~22시

* 간소화 서비스 개통(1.15.) 이후로 접속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18:00 이후에 제출 가능

5 유의 사항

- 제출한 자료 100건 중 오류 10건이 포함되어 이를 수정하여 제출할 경우, 반드시 수정분 **10건을 포함한 전체 100건을 다시 제출**하여야 합니다.(예시)
- 엑셀 파일은 5MB이하의 경우만 제출 가능하며, 그 이상은 텍스트로 변환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
국세청
National Tax Service